

제2020-190호 2020년 10월 12일(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0-400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3
- 여수시 고시 제2020-4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5
- 여수시 고시 제2020-40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7차) 고시 6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0-2485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돌산읍 상하동 진입도로개설공사) 7
- 여수시 공고 제2020-2488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대교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
- 여수시 공고 제2020-2490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묘도 창현C 진출입 도로 개설공사) 11
- 여수시 공고 제2020-2495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관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3
- 여수시 공고 제2020-249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취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5
- 여수시 공고 제2020-2500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신일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17
- 여수시 공고 제2020-2501호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20
- 여수시 공고 제2020-2506호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154kv 서순천 기설송전선로) 26
- 여수시 소라면 공고 제2020-44호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 예고 28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541호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1
- 여수시 조례 제1542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33
- 여수시 조례 제1543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여수시 조례 제1544호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 여수시 조례 제1545호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여수시 조례 제1546호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48
- 여수시 조례 제1547호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56
- 여수시 규칙 제74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9
- 여수시 규칙 제747호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62
- 여수시 규칙 제748호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71
- 여수시 규칙 제749호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3

회 략								
------------	--	--	--	--	--	--	--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공고 제 2020- 호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여수시장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여수시
3. 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가축분뇨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를 운반하는 자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 여수시 권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다만,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여수시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5. 기간 : 2020.11.1. 00:00부터 2021.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외부에서 해당지역에 진입한 차량은 가까운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 소독 후 소독필증을 교부받아 해당지역에서 이동·체류하는 동안 소지하여야 하며, 진입한 사유(업무 등)가 종료되는 즉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
- 나. 4호의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뇨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항체검사(SP, NSP) 및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을 승인
- (절차)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요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 승인서 발급 및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다. '나'에 따른 항체검사(SP)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 승인을 불허하고 과태료 처분 및 백신접종 명령을 병행
- 라.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여수시 고시 제2020 - 40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9-20 (2019.05.14.)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남면 두라리 51-3번지 지선	1,433	2020.10. 12.	남면 소두지역 연안시설 정비공사
2019-60 (2019.05.14.)			남면 화태리 산179-2번지 지선	2,372		남면 월정 문여 여객선 접안시설 및 물양장 설치공사
2020-1 (2020.01.06.)			남면 두모리 1419-8번지 지선	580.4		남면 두모마을 물양장 조성공사
2020-2 (2020.01.06.)			남면 안도리 164-1번지 지선	35.2		남면 안도 빼금마을 선착장 정비공사
2020-3 (2020.01.06.)			남면 우학리 983-3번지 지선	461		남면 학동마을 물양장 설치공사
2020-28 (2020.01.06.)			남면 두라리 135번지 지선	593		남면 두라리 선창부잔교 태풍피해공사

2020. 10. 12.

여 수 시 장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7차) 고시

여수시 신월동 산 237외 1필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7차)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2.

여 수 시 장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7차) 사항

1. 사업명 : 여수시 신월동 산 237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8번길 16(농성동, 3층) / (주)세일산업개발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339, 1207호(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주)금성개발
3. 사업위치 : 여수시 신월동 산 237 외 1필지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25,641㎡
 - 나. 연 면 적 : 57,452.215㎡
 - 다. 규 모 : 지하4층·지상8~24층, 주4동/부5동, 391세대
5. 사업기간 : 2019. 9. 18. ~ 2022. 10. 31.
6. 변경내용
 - 가. 지하 주출입구 공용부, 전기·기계실, 근린생활시설 위치 및 바닥면적 변경
 - 나. 주차장(104동 3F)신설 및 주차대수(502대 → 505대)변경
 - 다. 산책로 위치 변경 및 옹벽(블럭식 233.6M, 보강토 288.7M, 기타 49.9M) 신설
 - 라. 지하층수(레벨)에 대한 면적 및 명칭 변경
 - 마. 조경계획 및 면적 변경
 - 바. 건축면적 산정오류 정정
 - 사. 기타 건축물 배치 및 평면 조정, 주차장 E/V, 램프 설치 등
7. 주택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제사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돌산읍 상하동 진입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 10. 1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여수시 시청로 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종로 1-23호)사업
 - 명칭 : 돌산읍 상하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종류	
돌산읍	우두리	400-27 (400-11)	전	81	81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4*2	송*규				
돌산읍	우두리	400-17	도로	23	23	여수시 서정 6*2	임*태				
합계		2필지			104㎡		2명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10. 12. ~ 2020. 10. 26.(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청 도로과(여수시 시청동 1길 23)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 061-659-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교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 10. 12.

여수시장

1.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대교동 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수용재결 신청대상: 내역 별첨
4. 열람 장소: 여수시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2020. 10. 12.~2020. 10. 26.(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여수시청 도로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내용

○ 토지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관계인의권리			비고
동	지번 (당초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봉산동	167-13 (167-13)	전	177	177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길 **_**	우*수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355	여수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66-1 (166)	전	972	161중 66/294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길 **_**	우*수	-	-	-	
	166-1 (166)	전	972	161중 101/294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_*	최*열	-	-	-	
	165-3 (165-2)	전	735	295중 768.16/1395	전라남도 여수시 한산사길 **	이*옥	-	-	-	
	75-7 (75-3)	임	468	44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길 *, ***호	박*심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355	여수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86-3 (86)	전	1720	7중 226/700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	최*연	-	-	-	
합계	5필지			477㎡		5명		1명		

별첨 내용

○ 물건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봉산동	166-1	주택(폐가)	시멘트블록 슬레이트	57.97㎡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길 **_**	우*수	-	-	
봉산동	167-13	바닥포장	콘크리트	104㎡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길 **_**	우*수	-	-	
		울타리	철재	15m					
		반사경		1식					
		광나무		1주					
		자두		1주					
봉산동	166	울타리	철재	10m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_*	최*열	-	-	
합계		3건				2명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묘도 창촌IC 진출입 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 10. 12.

여수시장

1.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묘도 창촌IC 진출입 도로 개설공사
3. 수용재결 신청대상: 내역 별첨
4. 열람 장소: 여수시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2020. 10. 12.~2020. 10. 26.(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여수시청 도로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4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내용

○ 토지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관계인의권리			비고
동	지번 (당초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묘도동	1151-15 (1151-10)	임	992	215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길 **, ***동 ****호	공*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1길 19	여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1151-14 (1151-9)	임	1323	27중 165.5/1323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로 ***, ***동 ****호	권*숙	-	-	-	
	1151-14 (1151-9)	임	1323	27중 165.5/13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학로**번길 *-*	고*순	-	-	-	
	1151-14 (1151-9)	임	1323	27중 132/1323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로**번길 ** ***동 ***호	임*영	-	-	-	
	1151-13 (1151-8)	임	1389	64중 33/1389			-	-	-	
	1151-13 (1151-8)	임	1389	64중 330.5/138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 ***동 ***호	조*영	-	-	-	
	1151-13 (1151-8)	임	1389	64중 165.5/1389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번길 *-, ***호	이*순	-	-	-	
합계	3필지			246㎡		6명		1명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관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 10. 1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농어촌정비법 제9조
 - 명칭 : 관기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종류	
소라면	죽림리	813-139	임	331	7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관기길 66-1	김광진				1/2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상촌길 55	김규봉				1/2
소라면	죽림리	813-11	임	331	331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700-3	조성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4층	경남신용 보증재단	가압류	
합계		2필지			407㎡		3명		1명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10. 12. ~ 2020. 10. 26.(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청 건설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 061-740-1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취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 10. 1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농어촌정비법 제9조
 - 명칭 : 취적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종류	
울촌면	취적리	산88	유	893	893	여천군 울촌면 신평리 704	차성순				1/3
울촌면	취적리	산88-1	구	496	496	여천군 울촌면 신평리 704	차성순				1/3
합계		2필지			1,379㎡		1명		명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관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10. 12. ~ 2020. 10. 26.(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청 건설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 061-740-1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여수시 신월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26.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시 수리할 수 없음)

2020. 10. 12.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자 : (주)세일산업개발 대표이사 나연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1032)사업
- 명칭 : 여수시 신월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3.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신월동		78-31	답	188	188* (135.54/430)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다올부 동산신탁				
신월동		78-33	도	11	11	등) 여수시 신월동 101 송) 여수시 신월동 101	임윤택				

신월동	78-34	전	7	7* (46.28/136)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다올부동산신탁				
				7* (89.72/136)	등) 여수시 여서동 489-1 현대아파트 101-701 송) 전남 여수시 여서로 134, 101동701호(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임현섭				
신월동	78-37	전	11	11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다올부동산신탁				
신월동	78-38	전	30	30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다올부동산신탁				
신월동	78-39	전	7	7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다올부동산신탁				
신월동	78-41	대	17	17	등) 전남 여수시 신월3길 18(신월동) 송) 전남 여수시 신월3길 18(신월동)	권동업				
신월동	79-1	도	8	8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다올부동산신탁				
신월동	80-52	도	13	13	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 12층 송)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주)다올부동산신탁				
합계	9필지			163.26㎡		4명	0명			

○ 물건

물건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신월동 78-41	창고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16㎡	등) 전남 여수시 신월3길 18(신월동)	권동업			
	담장	블럭조	1식	송) 전남 여수시 신월3길 18(신월동)				
합계					1명		0명	

4. 열람장소 : 여수시청 게시판

5.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0. 10. 12. ~ 2020. 10. 26.(15일간)

6. 의견서 제출처 :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3),[사업문의 : 사업시행자 보상담당(☎ 061-746-3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여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2조 및 제23조, 「여수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제8조, 「여수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12.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운영 · 관리
2. 위탁내용

가. 위탁시설 유지·관리

- ▶ 시설명 : 여수시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 ▶ 위 치 : 전남 여수시 공화남2길 19-1 (공화동)
- ▶ 규 모 : 261.32㎡

구 분	공 간 구 성	면 적
1층	공동판매장, 창고, 화장실	130.66
2층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130.66

나. 위탁사무

○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회계, 예산, 시설 등 관리

▶ 사회적경제 분야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 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시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사회적경제 동향분석 및 정책조사 연구 지원
10.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 마을공동체 분야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행 지원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 및 연구
3. 마을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 민간단체 간 연계망 구축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지문·연수·박람회·세미나·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지원
6. 중앙부처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유치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유경제 분야

1. 공유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
2.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공유 촉진을 위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원 사업
6. 공유 촉진에 관한 연구·분석 및 평가
7. 공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8. 그 밖에 공유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공정무역육성 분야**

1.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지원
2. 공정무역육성을 위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3. 공정무역육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추진 사업
7. 그 밖에 공정무역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위탁기간 : 사무개시일(2021. 1. 1.예정)로부터 3년간

4. 위탁금액 : 연간 350,000천원

- 산출기준) 인건비 199,365천원, 운영비 14,635천원, 사업비 136,000천원

* 항목 간 일부 조정 가능하며, 운영비 증액 불가

* 위탁금액은 예산편성 결과 및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위탁기간·조건 등에 따라 재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세공과금 등 실소요경비가 증감될 수 있음

5. 선정방법

○ 모집방법 : 공개 모집(전국)

○ 자격요건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회계·노무·법무 등 분야별 경영지원 역량이 있고 지역 내 자원동원 능력 등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참가신청법인(단체)에 재직 중인 4대보험 가입 직원이 10명 이상인 법인(단체)

○ 신청자격 제한

-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대상에서 제외
 - ▶ 제출한 서류상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 ▶ 미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기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안정적 관리·운영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조직구성

- 구성인원 : 4명[센터장 1, 팀원 3]
- 자격기준

구분	자 격 기 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2.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등 관련 분야 기관 및 단체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자
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2.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시민사회단체에서 총 근무연수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학과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사회학, 지역사회학, 사회적기업학

※ 관련 분야 :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업무 경력
 ②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기관 근무 경력

7.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0. 10. 12. ~ 11. 1. (21일간)
- 접수기간 : 2020. 11. 2. ~ 4. (3일간) 18:00까지
- 제안서 교부 : 별도로 교부하지 않음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접수장소 : 여수시 인구일자리과
 -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오림동, 진남체육공원) 행복교육지원센터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서류 중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8. 제안서 작성요령

-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제안요청서 참고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심사일자 : 2020. 11. 10.(화) (예정) ※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 발표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요내용 : 심사당일 기관별 제안서(PPT) 발표 후 질의응답

-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 순

- 발표시간 : 기관당 PPT 15분, 질의응답 20분 이내

- 참석자 : 기관당 2인(대표, 센터장*)

- * 추후 위탁기관으로 선정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근무 예정인 센터장 참석

- 선정기준 : 심사기준 평가표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 선정방법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 평가결과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

- ▶ 제안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선정심사 결과 : 시 홈페이지 공고

10. 협상 및 위탁기관 선정

- 협상기간 :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기관 순으로 협상절차 추진

- 최고 득점한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 순위자와 협상 착수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술제안서의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11. 협약체결

- 선정된 수탁기관의 제안서 전 내용을 포함, 여수시와 별도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서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함

12. 기타사항

- 위탁운영 내용 및 조건 등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함
- 공개모집에 제출한 제안서(신청서 등 원본제외)는 제안서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반환을 요청한 경우 반환하며, 접수기간 내 수정, 추가보완이 가능함 ※ 접수 마감 후 수정·보완 불가
- 공개모집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함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선정심사 평가 자료임을 감안,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취소함
- 선정이 확정된 후 수행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취소됨
-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외 겸직·겸업을 금함

보상계획 열람 공고

<154kV 서순천 기설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110호(2017.8.14)」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48호(2020.09.23)」로 승인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154kV 서순천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154kV 서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 나. 사업의 목적 : 154kV 서순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선하지 및 철탑부지 중, 미보상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 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 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목적이 있음.
- 다. 사업의 내용 : 송전선로 0.14km, 5필지의 미보상 토지 보상
- 라. 사업구역의 위치 : 전남 순천시, 여수시 일원
- 마. 사업 시행기간 : 2017. 1 ~ 2022. 12(72개월)

2. 보상대상 토지 내역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창리 285-2 등 5필지 : 붙임 관보고시문 참조

3. 보상 시기, 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 나.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합니다.
-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보상협의회 개최(필요시)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구분지상권 또는 지상권 설정 및 보상금 지급
- ※ 협의 불성립 시: 사용재결 → 보상금 공탁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가. 열람기간 : 2020. 10. 12 ~ 10. 29 (14일 이상)

나. 열람장소 : 해당 시·군·구(홈페이지 고시/광고 란에서 확인 가능)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용지파트(2층)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4(농성동) ☎ : 062-260-5781)
- 전남 여수시 지역경제과

다. 이의신청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관보)를 보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보상대상 토지의 누락 또는 편입면적 등의 상이할 경우)가 있을 경우는 열람 기간 만료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와 토지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의 추천 방법은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보상 물건의 내용(편입면적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관보)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보상 금액 및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개별통지(안내)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 들께서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기타 보상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지역협력부 용지파트(2층)(☎ 062-260-5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감시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에 감시카메라(CCTV) 설치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소 라 면 장

1.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에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단속업무 추진,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공고방법 : 여수시 홈페이지 (<http://www.yeosu.go.kr>), 소라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게시판

4.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감시카메라(CCTV) 설치
- 행정예고기간 : 2020. 10. 12. ~ 2020. 11. 2. (22일간)

○ 촬영범위 및 시간 :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주변, 24시간 연속촬영

5. 감시카메라(CCTV)설치 장소

읍면동	주소지	설치목적	카메라수량
소라면	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1390-1번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시설물 보호	고정형 4대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11. 2.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 또는 팩스(FAX 061-659-1901)

다. 제출서식 : [붙임1] 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연락처,주소,의견

마. 문의 및 의견제출 : 여수시 소라면사무소(여수시 덕양로 389, ☎ 061-659-106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감시카메라(CCTV)설치 예정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감시카메라(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 예정 장소	검토 의견 (의견제출 내용)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소라면장 귀하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동 

여수시 조례 제1541호

붙임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경 

여수시 조례 제1542호

붙임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1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득”을 “문자 이해”로 한다.

제2조(「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피”를 “나무껍질”로 한다.

제3조(「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백만입방미터”를 “3백만세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개정)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 보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u>문자해득</u>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 ----- <u>문자 이해</u> ----- ----- -----.</p> <p>2. (현행과 같음)</p>

2. 여수시 도시립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수목의 교체) ① 도시립등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이하 “바꿔심기등”이라 한다)의 방법으</p>	<p>제11조(수목의 교체) ① ----- ----- ----- ----- -----</p>

로 교체한다. 1. (생략) 2. <u>수피</u> 또는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 5. (생략) 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u>나무껍질</u> -----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3.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u>3</u> <u>백만입방미터</u>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 ----- ----- <u>3</u> <u>백만세제곱미터</u> ----- ----- ----- ----- -----. -----

4. 여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u>계리상황의 보고</u>) (생략)	제19조(<u>회계처리 상황 보고</u>) (현행과 같음)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경



여수시 조례 제1543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543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785명이며”를 “1,872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56명”을 “1,843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0. 10. 1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 이내	7% 이내	26% 이내	29% 이내	27% 이내	9% 이상	1% 이내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9% 이내	91% 이상

비고 : 1. 일반직과 연구·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 이내	89% 이내	8% 이상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개정 2019. 11. 29., 2020. 10. 1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872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828	-					
2급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4	35	3	8	10	1	27
6급 이하 계	1,729	-					
전문경력관 계	3	-					
별정직 계	1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	-					
연구직 계	9	-					
연구관							
연구사	9	-					
지도직 계	33	-					
지도관							
지도사	33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연구·지도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 일반직 직속기관 4급·5급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복수정원 포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여수시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785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756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872명</u>이며 ----- -----.</p> <p>1. ----- <u>1,843명</u></p> <p>2. (현행과 같음)</p>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2 통



여수시 조례 제1544호

붙임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544호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아 해당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세외수입 (<u>「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2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의 증대에 기여한 자</p> <p>2. (생 략)</p>	<p>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 <u>「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u>----- ----- -----</p> <p>2. (현행과 같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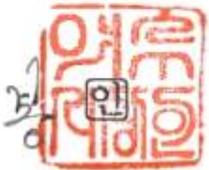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2



여수시 조례 제1545호

붙임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1545호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액)①·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u>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지원액)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 「<u>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u>」 ----- ----- -----</p>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46호

붙임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1부.

여수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령 80년 이상 수목으로 마을에 위치하며(지목이 임야는 제외), 주민들이 중요 또는 신성시 하는 수목 중 주민들에게 쉼터 등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활용도가 높은 노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에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노거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 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노거수(규격)의 선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수 종 별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비고
소 나 무	150	20	1.2	
느 티 나 무	150	25	2.0	
은 행 나 무	350	20	2.6	
백 송	150	9	0.7	
жат 나 무	200	20	1.2	
향 나 무	150	10	0.7	
곰 솔	100	20	1.0	
비 자 나 무	150	10	1.0	
개 비 자 나 무	80	5	0.6	
주 목	150	6	0.7	
만 주 곰 솔	150	30	1.0	
잎 갈 나 무	150	35	1.5	
낙엽송(일본잎갈나무)	150	35	1.5	
가 문 비 나 무	150	40	1.5	
종 비 나 무	150	30	1.0	
전 나 무	150	25	1.6	
삼 나 무	150	40	1.5	
낙 우 송	150	40	2.5	
측 백 나 무	150	10	0.8	
편 백	150	20	1.5	
화 백	150	20	1.0	
졸 참 나 무	150	20	1.0	

수 종 별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비고
피 나 무	100	11	0.6	
모 과 나 무	150	10	1.0	
개 박 달 나 무	150	11	1.2	
나 도 밤 나 무	80	10	1.2	
가 래 나 무	100	15	0.8	
박 달 나 무	150	15	0.8	
물 푸 레 나 무	100	15	0.7	
살 구 나 무	100	12	0.8	
두 립 나 무	80	8	0.8	
뽕 나 무	100	10	0.6	
소 태 나 무	150	12	0.7	
참 죽 나 무	80	20	1.2	
호 도 나 무	100	15	1.0	
사 시 나 무	80	18	0.9	
먹 구 슬 나 무	100	10	0.8	
갈 참 나 무	100	20	1.0	
분 비 나 무	150	15	0.8	
후 박 나 무	100	19	0.7	
두 충 나 무	100	20	0.8	
팔 배 나 무	150	20	1.0	
층 층 나 무 류	150	12	2.0	
팽 나 무 류	200	20	1.5	
대 추 나 무	150	12	1.0	
리 기 다 소 나 무	150	25	1.5	
연 필 향 나 무	150	50	1.0	
상 수 리 나 무	100	20	1.0	
거 제 수 나 무	150	30	1.5	

수 종 별				수령(년)	수고(m)	흉고직경(m)	비고
밤	나	무		150	20	1.2	
굴	참	나	무	150	30	1.5	
들	매	나	무	100	25	1.4	
회	화	나	무	150	20	1.5	
버	드	나	무	80	20	0.9	
시	무	나	무	100	20	1.5	
드	릅	나	무	150	20	1.5	
서	나	무		100	20	1.0	
음	나	무		100	15	1.2	
이	팝	나	무	100	15	1.2	
배	나	무	류	80	17	0.9	
주	엽	나	무	80	20	1.0	
백			양	100	18	1.0	
떡	갈	나	무	100	20	1.0	
가	죽	나	무	80	25	1.0	
참	죽	나	무	80	25	1.0	
감	나	무		150	20	1.0	
노	간	주	나	무	9	0.8	
오	동	나	무	100	18	0.8	
오	리	나	무	100	14	0.8	
벗	나	무		100	20	0.8	
물	오	리	나	무	15	0.8	
교	목	침	엽	수	30	1.0	
활		엽		수	80~200	20~30	0.8~1.5
관	목	침	엽	수	150	5	0.6
침		엽		수	80~200	2~5	0.2~0.6

[별지 서식]

노 거 수 관 리 대 장

지 정 번 호		지 정 년 월일		구 분			
수종및본수		과 명		학 명			
소재지및위치		지 목		면 적	m ²		
추정수령	년	수고	m	가슴높이 둘레	cm	수관 폭	m
소유자	주소			주소			
	성명 (전화)	()	관리자	성명 (전화)	()		
지정 이유							
나무의 특징							
연혁 및 전설							
기타(해제사유)							

※ 구분은 명목、당산목、정자목、호안목、기형목、풍치목、비보수(裨補樹)、도래솔、표식수(表識樹)、정원수、수림지(樹林地) *중복기재가능

제20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47호

붙임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1부.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여수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여수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여수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수난구호 활동에 사용된 활동비와 유류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장 또는 여수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중복 또는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여수시장 김근영 

여수시 규칙 제746호

붙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46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8.12.31., 2009.3.16., 2009.6.8., 2009.10.30., 2009.12.31., 2010.3.12., 2010.12.1., 2011.1.17., 2011.9.23., 2011.12.31., 2012.8.10., 2013.1.10., 2013.8.14., 2014.1.13., 2014.2.21., 2014.6.30., 2015.1.15., 2015.6.5., 2016. 2. 1., 2016.4.22., 2016.8.1., 2016.12.30., 2017. 7. 3., 2017.12.29., 2018.8.1., 2019.1.2., 2020.1.2., 2020.7.10., 2020.10.12.)

여수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정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총 계	1,872	883	29	241	216	15	32	139	317
정 무 직 계	1	1							
시 장	1	1							
일 반 직 계	1,828	874	29	209	216	15	32	136	317
3급	1	1							
4급	11	6	1	2	2				
5급	84	35	3	8	10	1	1	6	20
6급	379	196	7	43	40	3	7	37	46
7급	459	255	5	48	59	4	6	21	61
8급	473	216	7	85	56	3	6	22	78
9급	418	162	6	23	49	4	12	50	112
전문경력관(나급)계	3	3							
봉 역 원	1	1							
화 선 방 관 리 원	1	1							
직 업 훈 련 교 사	1	1							
별 정 직 계	1	1							
비서요원(6급상당)	1	1							
연 구 직 계	9	7		2					
기 록 연 구 사	2	2							
농 업 연 구 사	2			2					
학 예 연 구 사	5	5							
지 도 직 계	33			30				3	
농 촌 지 도 사	33			30				3	

제10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규칙 제747호

붙임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여수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

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 대해 전
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 가. 추정금액 8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 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 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 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 과장, 사업소·출장소장

- 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다.

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을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관리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계담
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3과 같다.

② 회계관리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관리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
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관리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칭	지방의회	제1관서 (읍·면·동제외)	기타 관서· 임시관서	읍·면·동	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 계 책 임 관	행정지원국장					
징 수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분 임 징 수 관	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담당관·과의 장(이하 "담당관·과 장"이라 한다)		세입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지원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 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회계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주무전문위원	경리담당과장, 각 관·과장 (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소장
총괄채권관리관	행정지원국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경제국장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경제국장 (기획예산과장)					
통 합 지 출 관	회계과장					
지 출 원	경리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읍·면·동의 경리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세정, 징수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세입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관·과 서무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	각 관·과 서무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및 임시관서의 서무 업무팀장(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 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총무업무팀장
세 입 세 출 외 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경리업무담당자	서무업무팀장	경리업무담당자	총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 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	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회계과장)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기타 경비	전액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1. 예산 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수시와 전라남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여수시의회 의결 또는 동의·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제10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여수시장

김우봉



여수시 규칙 제748호

붙임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748호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
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0월 12일

여수시장 권오봉



여수시 규칙 제749호

붙임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보조의 범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를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의 “주차 면”을 “주차구획”으로, “200만원”을 “300만원 지급”으로, 같은 조 제2호의 “매 1면마다 100만원”을 “1면마다 150만원”으로, 같은 조 제3호의 “없다.”를 “없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 공간(1면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1면마다 300만원 지급

제3조(보조의 신청) 제1항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4호”를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근 주민, 사업자 또는 관리수탁자의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한쪽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도로 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6개월 단위로 배정하며, 배정받은 자에게는 별표의 주차증을 발행한다. 다만, 신규 설치된 구획의 경우 처음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배정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전용주차구획 운영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4.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증을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6.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변경·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제9호·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증 (제9조제4항 관련)

발급번호 <input type="text"/>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증	
 배정구획	차량번호 <input type="text"/>
	유효기간 <input type="text"/>
	주차시간 전 일
 여 수 시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증 준수사항
<p>○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p> <p>○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미 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 : 여수시 교통과 (061-659-4151)</p>

발급번호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증



배정구획

차량번호

유효기간

주차시간

주 간



여수시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증 준수사항

-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미 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여수시 교통과 (061-659-4151)

발급번호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증



배정구획

차량번호

유효기간

주차시간

야 간



여수시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증 준수사항

-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시간 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 및 견인됩니다.
-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미 부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여수시 교통과 (061-659-4151)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서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접수번호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자 택					전화번호				
	소 사업장					휴대전화				
신청차량	차량번호					차량등록주소				
	차 명	소유자성명		관계		배기량				
주차 희망구획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국가유공자	해당, 미해당	장애인	장애정도	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			년			
고엽제 후유증 환자	해당, 미해당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				명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

◆ 작성요령

- “신청인”란의 “사업장주소”는 상시근무자가 신청할 경우만 작성합니다.
- “신청차량”란은 신청하시는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며 “관계”란은 신청인과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주차희망구획”은 배정받고자 하는 주차구획을 기재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 환자 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장애인”란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현 주소지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상의 현 주소지 거주기간을 기재하시면 되며,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 란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 수를 기재합니다.

◆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점수
1순위 배정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
2순위 배정	주차 거리	50m 미만	20
		50m이상 ~ 100m 미만	16
		100m 이상	12
	차 종	1000cc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20
		1000cc ~ 1600cc 미만 승용차	18
		1600cc ~ 2000cc 미만 승용차	16
		2000cc ~ 3000CC 미만 승용차	14
		3000cc 이상 승용차	12
		9인승 이하 소형승합, 1톤 이하 화물	10
		10인승 이상 16인승 미만 승합	8
관내 거주기간	15년 이상	30	
	14년 이하	거주 기간 ×2점	
가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	1인당 2점	
3순위 상근자	미배정 구간 배정		

1. 동점자 선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순위 배정자, 가점자, 신청 후 대기기간, 최단 주차구획과 신청자 거주지와 의 근거리, 여수시 거주기간 (전입일자 적용) 순으로 선정
 2. 신청구획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 선착순 배정
- ※ 운영구간별 지역특성 등에 따라 배정기준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서

◆ 운영시간 :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전 화 번 호	
		사 업 장					휴 대 전 화	
신 청 차 량	차 량 번 호				차 량 등 록 주 소			
	차 명		소 유 자 성 명		관 계		배 기 량	
주 차 희 망 구 획	1 지 망		2 지 망		3 지 망		4 지 망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기간연장 신청서

◆ 기간연장 배정기간 : 20 . . . ~ 20 . . . (개월)

운영시간	1. 전일제	2. 주간제	3. 야간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업 장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신청차량	차량번호	자동차명	
배정 주차구획			
신청구분	거 주 자	사 업 자	상 근 자

◆ **연장조건**

-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부여 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따라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보조의 범위)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u>주차면을 신규로 1면 확보하는 자</u>는 <u>200만원</u></p> <p>2.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로 확보할 경우 <u>매 1면마다 100만원씩</u> 지급</p> <p>3.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u>없다</u>.</p> <p><u><신 설></u></p> <p>제3조(보조의 신청) ①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4호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 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p>	<p>제2조(보조의 범위) ----- ----- ---- <u>제22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u>----- ----- -----.</p> <p>1. ----- <u>주차구획</u>----- -- <u>300만원 지급</u></p> <p>2. ----- ----- <u>1면마다 150만원</u> <u>씩</u> -----</p> <p>3. ----- ----- ----- --- <u>없음</u></p> <p>4. <u>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 공간(1면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1면마다 300만원 지급</u></p> <p>제3조(보조의 신청) ① <u>조례 제22조제1항제3호</u>----- ----- ----- -----</p>

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하고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후에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조제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근 주민, 사업자 또는 관리수탁자의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한쪽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도로 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6개월 단위로 배정하며, 배정받은

자에게는 별표의 주차증을 발행한다. 다만, 신규 설치된 구획의 경우 처음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배정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전용주차구획 운영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4.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증을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6.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변경·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